

서산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군폐기물관리예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4호의 2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별 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다음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태료부과기준

이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폐기물관리법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법 제7조)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25	25	25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 3킬로그램미만	50	50	50
	2) 3킬로그램이상 10킬로그램미만	70	70	70
	3) 10킬로그램이상	100	100	100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 3킬로그램미만	100	100	100
	2) 3킬로그램이상 10킬로그램미만	150	150	150
	3) 10킬로그램이상	200	200	200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 10킬로그램미만	200	200	200
	2) 10킬로그램이상 100킬로그램미만	300	300	300
	3) 100킬로그램이상 500킬로그램미만	400	400	400
	4) 500킬로그램이상	500	500	500
바.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재류등)을 버리는 행위(법 제14조 제1항의 다량배출자 및 동법 제17조 제1항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제외)				

1) 100킬로그램미만	500	500	500
2) 100킬로그램이상 500킬로그램미만	600	600	600
3) 500킬로그램이상 1000킬로그램미만	700	700	700
4) 1000킬로그램이상 2000킬로그램미만	800	800	800
5) 2000킬로그램이상 3000킬로그램미만	900	900	900
6) 3000킬로그램이상	1,000	1,000	1,000
2.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6조 제2항)			
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의 경우	300	600	1,000
나. 다량배출자이외의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20	50	100
3. 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법 제17조 제4항)	400	700	1,000
4.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41조)	300	500	1,000
5.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7조 제1항)	1,000	-	-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과태료는 별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산 군 수 (인)		

과 태 료 납 부 서

(수납은행 보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수납날자도장		

영 수 필 통 지 서

(서산군청 통보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서산군수 귀하		
수납날자도장		

영 수 증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자도장		
취급자인		

380mm X 180mm
(인쇄용지 (특급) 34g/㎡)

[별지 제4호의 2서식]
(갑)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계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반사실	일시	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	까지
위반행위자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인쇄용지(복합) 34g/㎡]

※ 표중 발행번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계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반사실	일시	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	까지
위반행위자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p>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합니다.</p> <p>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p>				
서 산 군 수 (인)				

168mm×118mm

[인쇄용지(복합) 34g/㎡]

※ 표중 발행번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수납은행 보관용)

(병)

과 태 료 납 부 서

발행번호	계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인)	

168mm × 118mm

[인쇄용지(특급) 34g/m²]

※ 표중 발행번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물 부착 인쇄.

(정)

(개인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발행번호	계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취급자인	

168mm × 118mm

[인쇄용지(특급) 34g/m²]

※ 표중 발행번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물 부착 인쇄.

(무)

(서산군 통지용)

과태료 납부영수필 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서산군수 귀하			

168mm×118mm
[인쇄용지(복합) 34g/㎡]

서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군 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중 “금액의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를 “금액의 100퍼센트로 하며”로 한다.

제29조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다)

제37조중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한한다)

제38조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것에 한한다)

11. 종교시설

제39조중 제3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것에 한한다)

10. 자동차 관련시설(중기 및 자동차계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제40조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것에 한한다)

제67조 제4조 [서식] 용도, 지역구분, 띄어야할 거리, 적용대상 건축선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노유자시설의 적용대상 건축선중 “출입구가 있는 모든 건축선”을 “모든 건축선”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분한것으로 본다.